

2008. 2. 13(수) 09:30

의회운영위원회실

- 제150회 임시회 -

제안설명서 (총괄)

《 제안설명 안건 》

- “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
- “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”
- “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”

의회운영위원회

제안 설명서

■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최만식 의원입니다.

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
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
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개정으로

-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법
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로,
- 제9조중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을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
내용입니다.

■ 따라서 본 의원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
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
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■ 감사합니다

제 안 설 명 서

■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한성심 의원입니다.

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
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
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 하게
되었습니다.

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○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조문 개정으로

- 제1조중 “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3” 을
“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” 로
- 제2조제2호중 “영 제15조”를 “영 제33조”로
- 별표제1호 서식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의2” 를
“지방자치법 제34조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■ 따라서 본 의원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
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
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■ 감사합니다

제 안 설 명 서

■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유근주 의원입니다.

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
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
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개정으로

- 제1조중 “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9조의4”를
“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”로
- 제5조중 “영 제19조의4”를 “영 제54조”로
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■ 따라서 본 의원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
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
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■ 감사합니다

제 안 설 명 서

■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윤창근 의원입니다.

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
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
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개정으로

- 제1조중 “동법 시행령 제19조의2”를 “같은법 시행령
제39조”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■ 따라서 본 의원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
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
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■ 감사합니다

제안 설명서

■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김해숙 의원입니다

■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, 조례 제17조(준용규정)중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관련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및 조례명 개정으로

- 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로 하고, “경기도 성남시의회”를 “성남시의회”로
- 제16조중 “경기도 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를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

- 제17조중 “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
“ 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와
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 ” 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■ 따라서 본 의원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
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
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■ 감사합니다.

제 안 설 명 서

■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김현경 의원입니다.

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■ 규칙 제2조2항의 “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”는
위원장 선임방법을 「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
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3 제3항의 “위원 중에서 의장
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”로 개정하여
위원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,

「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」
제정(2007.9.1 공포)으로 제4조제1항의 관련 조례명이 변경됨에
따라 변경 조례명으로 개정하여 관련 조례명을 명확히 하고자
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

○ 위원장 선임방법 및 조례명 개정으로

- 제2조제2항중 “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”를
“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”로
- 제4조제1항중 “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의원
윤리실천규칙을”을 “「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
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”로
- 제15조중 “성남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성남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
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■ 따라서 본 의원등 8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
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
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■ 감사합니다.